

## 청주 가경 아이파크5단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신청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신청자격',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는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66번지 일원
-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21층 ~ 29층 8개동 총 9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미정(추후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입주시기: 2023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대상 세대수(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형 (약식)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포함)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배정 세대수	최저층 배정세대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84A	84.8743	24.2320	109.1063	50.7375	159.8438	47.0076	177	17	7
84A1	84.7993	24.5465	109.3458	50.6926	160.0384	46.9661	199	19	8
84B	84.8833	24.5283	109.4116	50.7429	160.1545	47.0126	206	20	8
합계							582	56	23

- ※ 상기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청주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상기 타입은 표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청약시 주택형을 참조하여 주시고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환산방법: 면적(m<sup>2</sup>)×0.3025 또는 면적(m<sup>2</sup>)÷3.3058]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구분	84A	84A1	84B	합계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접수	5(15)	5(15)	6(18)	16(48)
장애인	5(15)	5(15)	5(15)	15(4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9)	4(12)	4(12)	11(33)
중소기업 근로자	4(12)	5(15)	5(15)	14(42)
합계	17(51)	19(57)	20(60)	56(168)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따라 특별공급도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됨.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 ( )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를 표시함.

■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0.12.18.(금)	· 일간신문 및 청주 가경 아이파크5단지 홈페이지
건본주택 개관	2020.12.18.(금)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251-1번지, 아이파크5단지 건본주택
특별공급 접수	2020.12.28.(월)	· 인터넷 청약접수(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 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순번 발표)	2021.01.06.(수)	· 한국감정원 청약 홈(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 가능. 은행창구 접수 불가, (10:00~14:00, 자격 입증 서류 지참)

**II 특별공급 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장애인,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18.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추천하여 당사에 통보한 분 [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당사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자격 요건(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청주시	충청북도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500만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아닌 자.  
(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일 주택형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 ④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물량이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경과 다음날 소멸됩니다.

III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의거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와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본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반드시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hdc.i-park.com/gagyeong5](http://hdc.i-park.com/gagyeong5))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2.18.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12.18.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세대원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